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등 >
■ 김위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362호)

2026. 9.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등	2
※ 참고자료	10
1.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 개요	10
2.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 개최 현황	11

I. 제안경위

2026년 6월 19일 김위상의원이 대표발의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년 7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 지구적 기후 위기로 인해 서식지 파괴 등 생물다양성 감소가 가속화됨에 따라 생물다양성 손실은 국가적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임.

하지만 현행법은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비롯하여 국가 차원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주요한 사항을 검토하는 생물다양성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하위 법령인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범부처 정책을 총괄 조율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대외적인 집행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위원회 관련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되 단순 자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위원회의 기능을 심의·자문 기구로 개편하는 한편,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출석 요구권을 명문화함으로써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안 제6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등

개정안은 기존에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던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면서, 동 위원회의 성격에 “심의”를 추가하고, 위원장을 기존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변경하며, 출석·설명 및 자료 제출 요구권을 추가하는 등 그 기능과 구성 등을 일부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u>제6조의2(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u> <u>①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 <u>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u> 1. <u>제7조에 따른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u> 2. <u>제8조에 따른 국가생물다양</u>

현행	개정안
	<u>성전략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u> 3. <u>제10조에 따른 국가 생물종 목록의 구축에 관한 사항</u> 4. 「<u>생물다양성 협약</u>」의 이행에 관한 주요 사항 5. <u>국가 생태계 평가에 관한 사항</u> 6. <u>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연구, 기술개발 및 국제협력 등에 관한 사항</u> 7. 그 밖에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u>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된다.</u> ④ <u>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u>

현행	개정안
	<u>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u> <u>⑤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 직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 위원회 출석·설명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 출석·설명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u> <u>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¹⁾.

1)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의 설치) ①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 개요2]

(목적)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주요 사항 자문

(근거) 생물다양성법 시행령('13.2.2 시행) 제2조

(구성) 위원장(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 포함 25명 이내 위원*

* (제6기 위원회) 위원장 1명, 정부위원 9명, 민간위원 9명 위촉('24.12.9~'26.12.8)

(실적) '13년 최초 구성 이후 현재까지 총 22차례 개최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다만, 동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이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어 범부처 정책을 총괄 조율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대외적인 집행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³⁾.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이하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이라 한다)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에 따른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법 제10조에 따른 국가 생물종 목록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생물다양성 협약」의 이행에 관한 주요 사항
5.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연구, 기술개발 및 국제 협력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을 말한다)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되,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각 1명
 2.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 그 밖에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을 소관 분야의 안전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⑤ 위원회의 심의 사항과 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의 실무적 검토를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⑥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2) 자세한 내용은 <참고자료1.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 개요> 참조

3) 참고로, 해당 사항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음

※ (국정과제 45-4)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 위원회의 지위를 격상하여 생물다양성 전략 이행과

이에 개정안은 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면서, 동 위원회의 기능 및 성격을 기존 자문에서 심의·자문으로 명시하고, 위원장을 기존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변경하며, 출석·설명 및 자료 제출 요구권을 명시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위원회의 법률상 위상과 범부처 협의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특히, 생물다양성협약 제15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목표 14는 생물다양성과 그 가치를 정부의 모든 단계와 부문에 걸쳐 정책·규제·계획 및 개발 과정 등에 통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국제적 정책 방향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⁴⁾.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첫째, 안 제6조의2제2항은 위원회의 기능을 ‘심의·자문’으로 규정하

관련한 자문에서 범부처 정책 조율로 기능을 강화

4) <Kunming-Montreal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中
TARGET 14

Ensure the full integration of biodiversity and its multiple values into policies, regulations, planning and development processes, poverty eradication strategies,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s,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and, as appropriate, national accounting, within and across all levels of government and across all sectors, in particular those with significant impacts on biodiversity, progressively aligning all relevant public and private activities, and fiscal and financial flows with the goals and targets of this framework.

고 있으나,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와 자문을 모두 수행하는 것인지, 안건의 성격에 따라 심의사항과 자문사항을 구분하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5),

법체계의 정합성과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여 관련 심의를 필수적 절차로 하려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조항에 해당 내용을 명시할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예컨대 안 제6조의2제2항제1호에서 심의·자문 사항으로 규정한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법 제7조제4항의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수립 절차에 명시적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6)7).

둘째, 안 제6조의2제4항은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

5) 참고로 위원회에는 의결기관인 위원회, 심의기관인 위원회와 자문·협의기관인 위원회가 있는데, **심의기관인 위원회**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갖춘 다수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는 업무에 관하여 심의 등을 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위원회로서,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적 절차이나 그 내용이 관계기관 등을 구속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음.

자문·협의기관인 위원회는 해당 위원회의 결정이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지 않으므로 반드시 법률에 설치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설치 근거를 두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성격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자료: 법제기준과 실제, p.288, 국회 법제실, 2024.5.)

6) **안 제6조의2(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제7조에 따른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이하 생략)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 ④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3항에 따른 소관별 추진전략을 총괄하여 작성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원활한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무회의 심의 전에 관계 전문가의 의견 청취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할 수 있다.

7) 참고로 안 제6조의2제2항제5호의 ‘국가생태계평가’와 관련해서는 현행법 제9조(생물다양성 조사 등)를 ‘국가생태계평가 등’으로 개정하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955호)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음.

는데⁸⁾, 실무위원회가 ‘심의’ 기능까지 담당하도록 함에 따라 실무위원회의 심의로 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할 수 있는지, 위임할 수 있는 안전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정할 것인지 등이 다소 불명확할 수 있어 이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참고로 현행법 시행령은 실무위원회가 ‘위원회의 심의 사항과 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의 실무적 검토’를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⁹⁾.

셋째, 관계 행정기관 소속 직원이 아닌 관계 전문가에게도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따를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적정한지와 자료 제출 요구의 대상 및 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구체적으로 현행법 시행령도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¹⁰⁾,

개정안은 민간인이 포함될 수 있는 관계 전문가에게 자료 제출과 그 요구에 따를 의무까지 부과하면서도 제출 대상 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8) 안 제6조의2(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 ④ 위원회에 상정할 안전을 미리 검토하고 위원회가 위임한 안전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9)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⑤ 위원회의 심의 사항과 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의 실무적 검토를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10)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을 소관 분야의 안전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넷째,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는 현행 시행령에 따라 설치·운영되어 온 위원회이므로, 개정법 시행 당시 시행령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지위와 처리 중인 안건의 승계 여부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경과조치를 둘 필요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541

□ 위원회 개요

- (목적)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주요 사항 자문
- (근거)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13.2.2 시행) 제2조
- (구성) 위원장(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 포함 25명 이내 위원*
 - * 9개 부처 고위공무원, 시·도지사협의체 추천자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기후부장관이 위촉한 자
- ※ (제6기 위원회) 위원장 1명, 정부위원 9명, 민간위원 9명 구성(‘24.12.9~’26.12.8)
- (의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실적) ‘13년 최초 구성 이후 현재까지 총 22차례 개최

□ 주요 자문사항[시행령 제2조제2항]

-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국가 생물종 목록의 구축에 관한 사항
- 「생물다양성 협약」의 이행에 관한 주요 사항
-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연구, 기술개발 및 국제 협력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참고자료2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 개최 현황

구분	안건	기간 및 방법
제1차 회의	1. 제3차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안)('14~'18) 2. 나고야의정서 관련 해외동향 및 국내이행 법률제정(안) 3.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BD COP12) 준비상황	'14.2.11. / 대면
제2차 회의	1. '14년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시행계획(안) 2.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BD COP12) 준비 현황	'14.9.11. / 대면
제3차 회의	1. 보호지역 확대 로드맵 마련 계획 2. 생물다양성 보전 국제협력 3. '15년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시행계획(안)	'15.6.23. / 대면
제4차 회의	1.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 운영규정 2.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 외래생물관리실무 위원회 구성계획(안) 3. 제3차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안)	'15.11.9.~11.21. / 서면
제5차 회의	1. 보호지역 확대 및 관리개선 추진계획 2. 생물다양성 보전 국제협력	'15.12.23. / 대면
제6차 회의	1. 제3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이행상황 점검 2. 생물다양성협약 부속기구 회의결과 3. 외래생물관리 개선방안	'16.6.28. / 대면
제7차 회의	1.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 국가생물종목록 실무 위원회 구성계획 2. 제17차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당사국총회 참가 결과보고	'16.10.18. ~ 10.24. / 서면
제8차 회의	1. 제3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이행상황 점검결과 2. 제13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대응	'16.11.25. / 대면
제9차 회의	1. 2017년도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시행계획(안) 2. 자생생물 확보·활용 연구 현황 및 계획 3. 외래생물관리 실무위원회 안건(관계부처 합동 갯끈풀 퇴치계획) 4. 생물다양성 및 습지의 날 기념행사 추진계획	'17.4.26. / 대면

제10차 회의	1. 제4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전략체계(안) 및 지표(안) 2. 제1차 국가생태계서비스전략(안) 3.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 실무위원회 진행상황 보고	'17.12.20. / 대면
제11차 회의	1. 2018년도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시행계획 2.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수립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18.4.24. ~ 5.1. / 서면
제12차 회의	1. 제4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안)('19~'23) 2.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 종합계획 3. 제14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대응계획 4. 생물다양성협약 제6차 국가보고서(안)	'18.11.2. / 대면
제13차 회의	'19년도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시행계획(안)	'19.4.10. ~ 4.19. / 서면
제14차 회의	'20년도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시행계획(안)	'20.5.4. ~ 5.14. / 서면
제15차 회의	'21년 국가생물다양성 전략 시행계획(안)	'21.5.14~5.24 / 서면
제16차 회의	'22년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시행계획(안)	'22.9.14~9.22 / 서면
제17차 회의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안)('24~'28)	'23.11.27~11.29 / 서면
제18차 회의	'24년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시행계획(안)	'24.7.9~7.15 / 서면
제19차 회의	'25년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시행계획(안)	'25.5.9~5.15 / 서면
제20차 회의	1. 생물다양성협약 제7차 국가보고서(안) 2. 자연자본공시 동향 및 대응	'25.12.16~12.23 / 서면
제21차 회의	나고야의정서 이행에 관한 제1차 국가보고서(안)	'26.2.9.~2.13. / 서면
제22차 회의	제1차 국가 생태계 평가보고서(안) 2026년도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시행계획(안)	'26.6.5.~6.12. / 서면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